



Gyeongbuk Happiness Foundation News | 2024

Vol. 51

경북 행복 BRIEF

법 인 명 칭 경북행복재단
발행·편집인 경북행복재단 최우진
주 소 39332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155 글로벌관 3층
T E L 054)710-8822
홈 페이지 www.ghf.or.kr

01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개발

강민정(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위원)
이창은(선린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교수) 이윤호(대한보건환경연구소 대표이사)

02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운영모델 개발

정상기(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위원)
홍재봉(부산생명의전화 원장)

03

경상북도 가족돌봄청년 지원방안

곽아람(경북행복재단 연구원)
장용언(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태한(구미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개발



강민정(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위원)

이창은(선린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교수)

이윤호(대한보건환경연구소 대표이사)

1 사회복지시설 대상 중대재해 사고 초기대응 및 재난관리 매뉴얼 필요

- 2021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결과 사망건수는 2,080건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고,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32조 2,647억 원으로 그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해예방을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이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되었으며, 2년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임(보건복지부, 2023).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명시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이와 관련한 법률 대응 매뉴얼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경상북도 관내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포함)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중대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및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개발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확한 기준을 구분하며, 셋째, 해당기관별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가상시나리오 및 우수사례 발굴, 넷째, 노인요양시설 및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함.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요약

1) 제정 배경

-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세월호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옴.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이러한 재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기업에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운영 시 발생하는 인명사고 등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 배경임.

2) 적용대상 및 범위

·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적용 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개인사업주를 포함)에게 적용됨.

표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구분	2022.1.27. ~ 2024.1.26	2024.1.27. ~	비고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건설업 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3) 목적 및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중대산업재해이고, 둘째는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3항 및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이므로, (1단계)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2단계) 유해·위험요인 원천적 제거 및 통제 수단·절차 마련, (3단계) 적정 인력, 조직 및 예산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 | | | |
|--------------------|-------------|-----------------------|
| 1. 경영자의 리더십 | 2. 근로자의 참여 | 3. 위험요인 파악 |
|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5. 비상조치계획수립 |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 7. 평가 및 개선 등 | | |

- 막연하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선제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의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5) 처벌 규정

- 개인사업자는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를 적용하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종사자에게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를 적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 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하며,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해를 입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3 도내 사회복지시설 안전 실태 분석

1) 분석 내용조사 대상, 방법 및 내용

- 도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²⁾은 총 122개소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60개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보육법인)은 62개소로 나타났음(도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대상 시설임.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12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받거나 각종 시설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 관련 각종 매뉴얼 자료를 수집한 결과,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 후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33개소 이었고, 최종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총 33건이었음.

2) 분석 결과

- 자료를 제출한 경상북도 관내 33개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관이지만, 법률에서 규정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합당한 준비를 구축하거나 이행하고 있는 기관은 없었음.
 -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재난안전대응매뉴얼은 ‘A4용지 1장 분량’의 재난 발생 시 대응 절차모형을 도식화 하거나 피난 계획 절차를 제시한 형태임.
 - 자료검토 결과 소방계획서 또는 시설안전관리계획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각종 자연재난 상황 및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내서 형식의 지침을 구비하고 있었고, 각 기관에서는 불이익(패널티)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이미 법제화된 분야를 중점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됨.
 - 제출자료의 상당 부분이 표준화된 양식에 맞게 각 기관에서 기입하는 형태로 작성된 것이어서 통일된 내용(유사함)이거나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장(기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잘 설정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을 사전에 미리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잘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 하지만 경상북도 관내 자료제출 기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기관)에서는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잘 수립하고 이행하는 준비가 시급하다고 인식됨.

4 FGI 결과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도내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포함)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도내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및 어린이집 대표자, 종사자 등 총 1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해당 기관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모르고 있었으며, 처벌이 강화되는 법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었음.
- 인터뷰 결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추가적으로 안전 관련해서 활동이나 점검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안전 관련 활동을 자체적으로 더 강화하고, 기관 내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는 법률 시행 후에는 전무하니 사회복지시설에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내용의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며, 각종 서식 및 계획서 양식 등을 예시로 포함시켜 줄 것을 강조하였음.
 - 사회복지시설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 발생한 사례 등을 소개하고 법률 적용과 관련된 Q & A를 함께 탑재하면 유용할 것이라 지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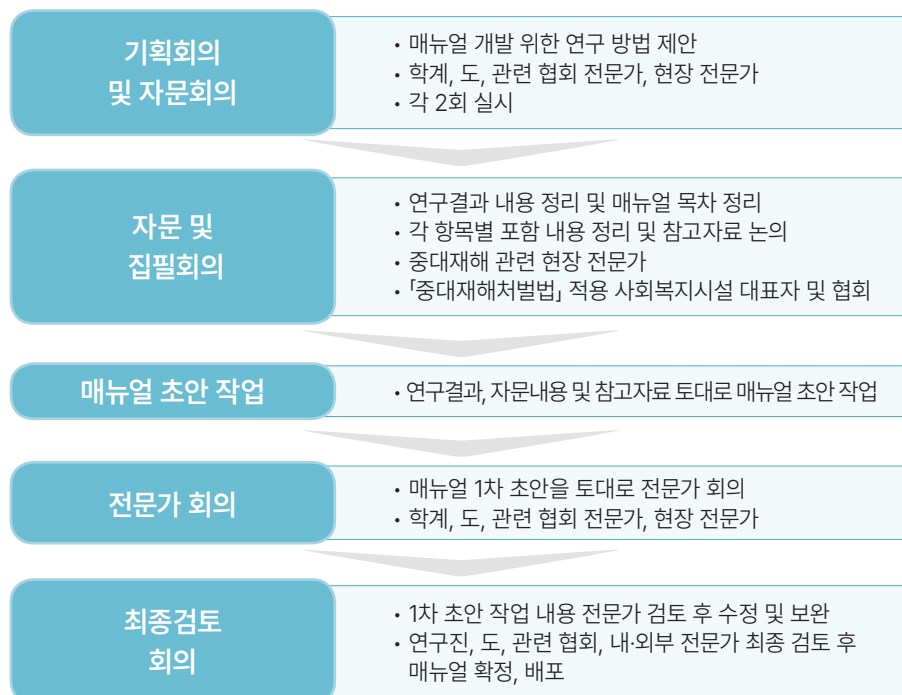
-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인 제안 사항 제시
 -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법률 적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법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도 차원에서 법률 관련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은 종사자와 이용자가 공존하고 있는 특수한 시설이며, 특히 노인요양시설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안전 관리가 보다 중요한 시설임. 안전 관련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안전 점검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적인 측면과 예산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도와 시·군에서 예산 부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이 개발된 후에 시설 유형별로 매뉴얼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수시로 매뉴얼 내용을 숙지하고 법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5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개발

1) 매뉴얼 개발 과정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은 중대재해 관련 전문가, 법률 적용 시설의 대표자, 학계, 도, 현장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매뉴얼 기획회의 및 자문회의를 각 2회 개최하였음.
 - 매뉴얼 기획회의 및 자문회의를 통해 본 연구의 방법(도 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분석, FG)을 확정하고 연구를 추진하였음.
 - 매뉴얼 개발과정은 기획회의를 시작으로 자문회의, 집필회의, 초안 작업, 전문가 회의 및 최종 검토 회의를 거쳐 확정하였음.

그림 1.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개발 체계도



-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은 본 연구의 선행연구, 각종 기존 매뉴얼 내용 분석, 도 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련 매뉴얼지침 분석 및 FGI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음(표 2).
- 사회복지시설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은 전국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유사한 기관의 현황을 찾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 중앙 및 지자체에서 개발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매뉴얼과 해설서를 바탕으로 초안을 구성하였음.
-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와 이용자가 공존하는 공간이므로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중대시민재해의 내용을 함께 매뉴얼에 담았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매뉴얼로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음.

표 2.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개발 과정

<p>매뉴얼 개발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경상북도 중대산업재해예방 매뉴얼」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부처 해설 모음집 · 법제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SOP)」 · 부산복지개발원 「사회적 재난 대응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운영 매뉴얼」 · 인천시 「중대시민재해 매뉴얼」 ·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p>도 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현장의 안전 관련 실태 분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설의 중대재해 대응 현황 파악 · 안전 관련 매뉴얼 및 지침 구비 상황 및 내용 분석
<p>FGI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준비해야 할 구체적 내용구성 · 시설 운영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매뉴얼 및 지침 · 시설의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선점검 및 사후조치 등 단계별 매뉴얼 구축 · 중대재해 발생 사례 및 Q & A 탑재
<p>전문가 자문 수정 및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에서 안전 관련 점검을 다양한 주체로부터 받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으므로 점검의 테두리 내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 · 기존 안전 점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활동을 사전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조치하는 형태로 매뉴얼 구성하여야 함. ·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기존의 시설에서 수행하는 안전점검과 동일하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관련 내용이 추가 되므로 법률 상 구비되어야 할 계획서 및 서식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 · 사회복지시설 대상 중대재해 발생 사례가 법 시행 후에 전무하므로 매뉴얼 내용이 사회복지시설에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구성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매뉴얼 상에 추가되어야 함.

2) 매뉴얼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본 매뉴얼은 매뉴얼 개요, 주요 의무사항 이행 매뉴얼, Q & A, 관련 서식의 순으로 구성하였음.
- 매뉴얼의 개요는 매뉴얼의 목적 및 구성, 활용방법으로 구성되었고, 일러두기를 개요 마지막에 삽입하였음.

▶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종사자와 이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종사자 부문은 중대산업재해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하였고, 이용자 부문은 중대시민재해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음.

- 주요 의무사항 이행 매뉴얼은 종사자와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행 지표를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차 순서대로 각 시설에서 이행하여야 의무사항들을 기술하였음.

▶ 모든 의무사항 이행 지표들은 선 점검-후 조치-상시 관리 등을 과정을 거치도록 각 지표들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고 각 체크리스트의 이행과 미이행으로 점검토록 한 후 미이행 지표들에 대해 조치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음.

▶ 각 이행지표별로 활용방법, 주의사항, 한번 더 들여다보기, 예시를 통해 매뉴얼 활용방법을 제시하였고, 관련 서식을 붙임으로 첨부하여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하였음.

그림 2.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구성

I. 매뉴얼의 개요	1. 매뉴얼의 목적 및 활용 방법 2. 매뉴얼의 구성 목차
II. 주요 의무사항 이행 매뉴얼	1.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시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⑥ 문서 보관 2.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시 이행에 관한 조치 ④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⑤ 문서 보관
Q & A	• Q & A 17개 문항으로 구성
관련 서식	• 시설에서 활용가능한 계획서, 서식 등 10종 탑재

부 록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점검 지표】

연번	점검 지표
중 사 자 용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3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안내하고 있습니까?
	4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5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전담조직 구성 미대상
	6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7 업무절차에 따라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로 대체 가능
	8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9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10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업인 경우 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 사업인 경우에 해당
	12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13 평가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의 충실성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1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의무 없음
	15 배치된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의무 없음
	16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로 인정) ※ 사회복지서비스업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 대상임.
	17 절차에 따라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까?
	18 의견청취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까?
	19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20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작업종지, 근로자 대피, 이용자 안전 등 대응조치,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21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22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23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24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25 기준·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및 위탁이 이뤄지는지 반기 1회 점검하고 있습니까?
	26 재해 발생 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27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28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을 명령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29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30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도 인정)
	31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까?

부 록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점검 지표】

연번	점검 지표	
종사자 응	32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33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34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점검하고 있습니까?
	35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까?
	36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는 교육에 대해 지체없이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37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3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4조
	39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5조
이용자 응	1	이용자 중대재해 예방업무를 위해 필요한 안전인력을 갖추었습니까?
	2	수립된 안전계획 인력 부문에 대해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3	반기 1회 이상 점검(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 결과 별도 보고 받아야 함) 및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까?
	4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업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까?
	5	수립된 안전계획 예산부문에 대해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6	반기 1회 이상 점검(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 결과 별도 보고 받아야 함) 및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까?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였습니까?
	8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 잘 수행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9	반기 1회 이상 점검(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 결과 별도 보고 받아야 함) 및 지체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까?
	10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11	안전계획을 이행하였습니까?
	12	반기 1회 이상 점검(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 결과 별도 보고 받아야 함) 및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까?
	13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발견 시 개선 등의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14	이용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조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15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16	기준·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및 위탁이 이뤄지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17	이용자 등의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18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19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을 명령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20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도 인정)
	21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까?
	22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23	안전을 관리하는 자 등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 또는 그 결과를 보고받습니까?
	24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는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2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참 고 문 헌

-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2022). 경상북도 중대산업재해예방 매뉴얼.
- 고용노동부. (202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고용노동부. (202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산업재해 관련 -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2022).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매뉴얼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대비.
- 관계부처합동. (2022).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부처 해설 모음집.
- 대전시 중대사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https://www.daejeon.go.kr>에서 2023. 4. 17 출력
- 법제처. (2023).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복지개발원·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2). 사회적 재난 대응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운영 매뉴얼
- 인천광역시 안전정책과. (2022).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처리절차(매뉴얼) 표준안
-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202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본 내용은 경북행복재단(2023)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개발(Report 2023-02)'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스페셜코멘트

SPECIAL COMMENT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정책을 규정하여 왔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의무와 조치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은 상황으로,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개발」연구는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그 결과물로서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점검 지표 (check-list)를 도출하였습니다. 대응 매뉴얼과 점검 지표는 안전·보건 비전문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시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진 대응 매뉴얼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다른 사업장으로도 확장될 것 기대합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안전학과 교수 송영웅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운영모델 개발



정상기(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홍재봉(부산생명의전화 원장)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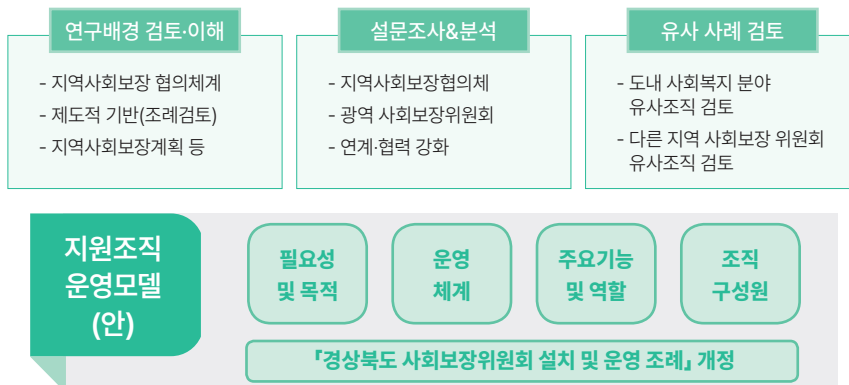
-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한계
 - 시·군 지역사회보장 체계와의 소통 부재
 -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한 시·군의 부정적인 인식
 - 경상북도 담당 공무원의 낮은 업무 비중과 잦은 인사 이동 등
- 사회보장위원회는 협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운영으로 협력적 논의 체계 부족
 - 경상북도의 경우 연 2회 정도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주로 서면 회의 위주로 진행됨

[경북행복재단(정상기·홍재봉, 2021)에서 제안한 내용]

-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전담조직의 필요성 제안
-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와 23개 시·군 사이에서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 필요

2) 연구목적 및 흐름도

연구목적 :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운영을 위한 모델 개발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 추진 및 시·군의 균형 발전 도모
- 경상북도와 22개 시·군 지역사회 보장의 연계·협력 강화

2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특성

- 여러 부서의 통합계획 수립 필요 ⇒ 계획의 범위가 방대함
-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상호 연계됨
 - 지역사회 균형발전도 고려해야 함
- 계획을 근거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천 조직까지 구성
 - 중앙 - 광역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 22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322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선 방향

- 광역시·도의 시·군·구 균형발전 지원계획 체계화
 - 사회보장사업[기준] + **균형발전 전략[추가]**
 - 균형발전지원계획을 '과업'의 개념으로 도입(『사회보장급여법』 제45조)
-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4년)와 연차별 계획(1년)의 연계성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 체계 마련
- 광역시·도 역할 명확화 및 매뉴얼 차별화
 - 광역시·도의 지원 역할 명확화(교육, 홍보, 컨설팅 등)
- 지방자치단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사회보장조사 선행, 통합 실시로 부담완화
 - 작성 분량 경량화, 성과지표 중심의 핵심 관리

3) 사회보장위원회의 과제

- 예산 지원의 한계
 -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 : 서울, 경기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화로 인해 광역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확대
 -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계획을 '과업'의 개념으로 도입
 - 광역의 실적 관리, 시·군에 대한 교육, 홍보, 컨설팅 등
 - 광역 담당공무원(경상북도 1인)의 광역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운영 한계
 - 계획의 범위, 계획 수립의 프로세스와 과업량, 지역성 반영 등 한계
 - 경북도 담당공무원(1인) 업무 범위
- :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② 정부합동평가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④ 이웃사촌행복공동체 운영 지원 등

3 분석결과¹⁾

1) [양적분석] 22개 시·군 의견수렴(대상 : 시·군 공무원 + 협의체 사무국 직원 / N=59)

- 시·군별 지역사회보장 업무담당 조직(팀) 현황

표 1. 시·군별 지역사회보장 업무담당 조직(팀) 현황

시·군	담당 부서		시·군	담당 부서	
	계획 수립	협의체 운영		계획 수립	협의체 운영
포항시	복지정책팀	희망복지지원팀	청송군	복지기획팀	복지기획팀
경주시	복지기획팀	희망복지지원팀	영양군	희망복지팀	희망복지팀
김천시	복지기획팀	복지지원팀	영덕군	복지기획팀	복지지원팀
안동시	복지행정팀	희망나눔팀	청도군	복지기획팀	희망복지팀
구미시	복지기획팀	복지기획팀	고령군	복지기획팀	복지기획팀
영주시	복지정책팀	희망복지팀	성주군	복지기획팀	희망복지팀
영천시	복지기획팀	희망복지팀	칠곡군	복지정책팀	희망복지지원팀
상주시	희망복지지원팀	희망복지지원팀	예천군	복지기획팀	복지기획팀
문경시	복지정책팀	복지정책팀	봉화군	희망복지팀	희망복지팀
경산시	복지정책팀	희망복지팀	울진군	복지기획팀	희망복지팀
의성군	사회복지팀	희망복지팀	울릉군	희망복지팀	희망복지팀

· 시·군의 지역사회보장 업무 담당조직(팀) 이원화 운영 많음(59.1%)
 ⇒ “계획 수립(팀)”과 “협의체 운영(팀)”의 불일치 확인 :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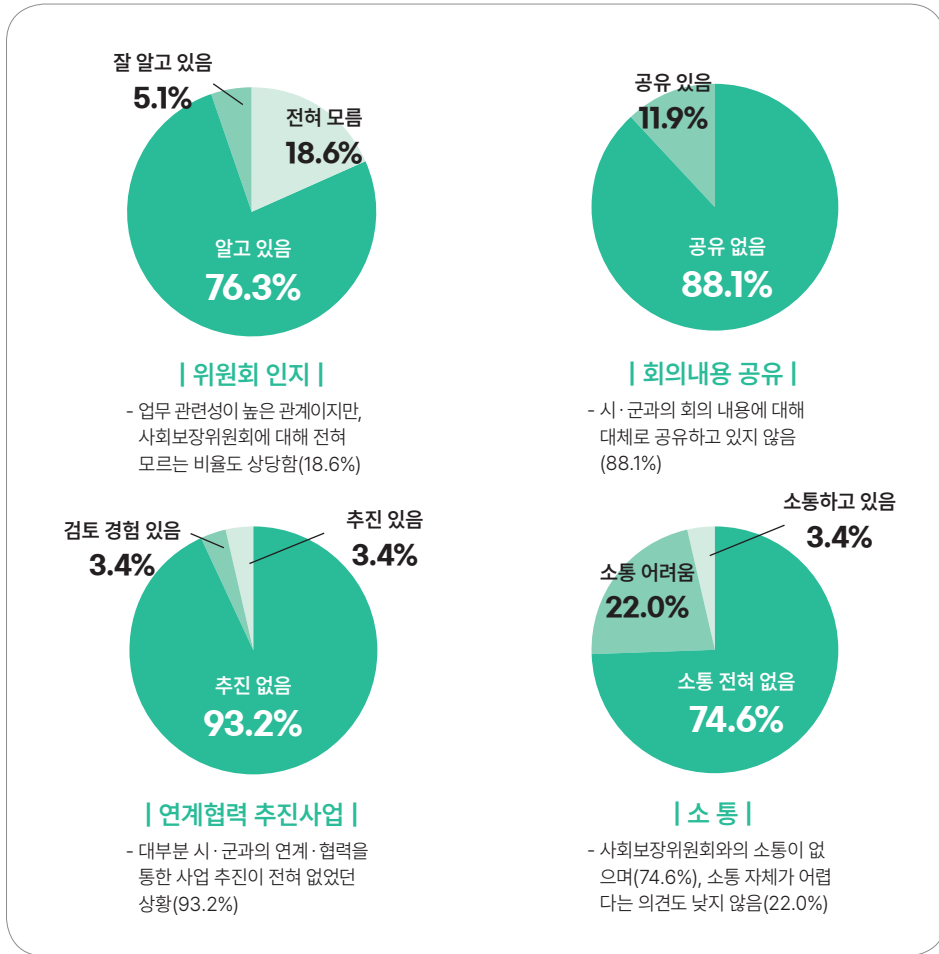
-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비중과 업무 난이도(우선순위 2개)

표 2.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비중과 업무 난이도

□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비중(우선순위 2개)	비중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점검 모니터링)에 관한 심의·자문	34.2%
②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및 자문	23.1%
□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난이도(우선순위 2개)	어려움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점검 모니터링)에 관한 심의·자문	80.0~86.4%
②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및 자문	71.4~78.1%

1) 본 연구의 상세한 조사내용 등은 경북행복재단 누리집(행복지식창고)연구보고서)246번 게시자료)에 있는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정상기·홍재봉, 2023).

-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 시·군과의 관계가 부정적임



-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필요성

· 반드시 필요함(42.4%) + 필요함(40.7%) ⇒ 사무국 운영 필요(83.1%)

-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이 필요한 이유(우선순위 3개)]**
- ① 광역 단위 연계·협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38.8%)
 - ②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연계·협력 지원(30.6%)
 - ③ 경상북도와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소통(22.4%)

- 향후 시·군에서의 사업 참여 의향(우선순위 3개)

- ① 우리 지역(경북 내)의 “우수사례 공유”(40.7%)
- ②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회”(39.0%)
- ③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워크숍”(37.3%)

2) [질적분석] 도내 사회복지 분야 유사 조직

- 경상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3.4억 원(예산)/5명(조직)
- 경상북도 이웃사촌복지센터 : 3.0억 원(예산)/4명

[시사점(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요소)]

- 광역 단위에서 사업 추진의 거점 역할 담당
 - 광역 단위에서 소통과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사업 수행
 - 시·군의 조직에 대한 지원 기능 수행
 - 교육훈련 관리,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관리,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등의 기능 담당
- ⇒ [참고] 하나의 팀 체제(팀장 1명, 팀원 3명)로 운영되며, 예산은 3억 원 이상 편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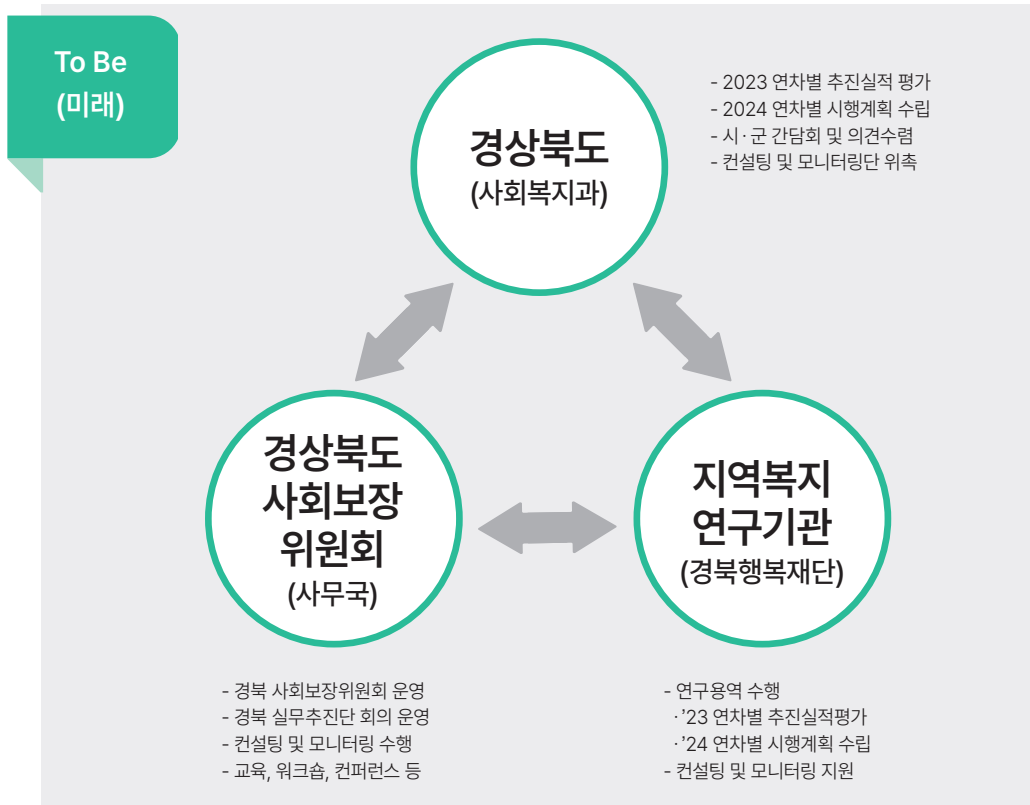
4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운영 모델(안)

1) 사무국 운영의 기본원칙

-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는 민·관 협력 기반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민(民)과 관(官)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함
 - 시·군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필요
- 사무국은 지원을 위한 하나의 조직(One Team)으로 구성되어야 함
 - 경상북도의 담당업무 보조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광역 사무국의 제 기능 수행이 필요함
- 사무국은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민·관의 소통이 원활한 곳에서 독립성(공간 및 운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이 요구됨

2) 운영체계

- (가칭) 경상북도 실무추진단 구성(안)



3) 주요 기능과 역할

-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신설되는 사무국의 지원을 통해 현재의 형식적인 회의 운영 체계에서 벗어나 광역 단위 전문기구로서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을 아우르고, 22개 시·군과 함께 지역의 사회보장에 대한 협력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표 3.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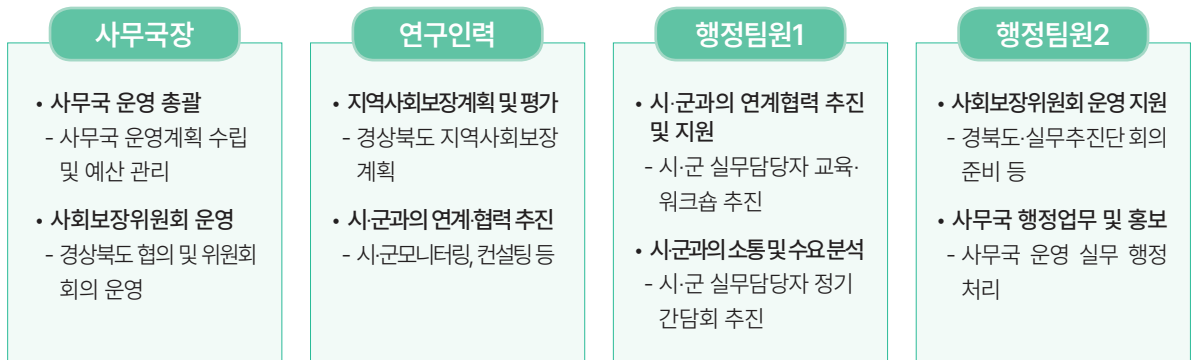
기능	역할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협업	· 광역 단위 민·관 협력네트워크 체계 구축 · 시·군 지역사회보장 관련 협력네트워크 체계 구축 · 광역 단위 사회보장 의제 설정과 협력적 공동 대응
지역 욕구 분석 및 조정	· 지역별·영역별 사회보장 분석 및 수요 파악 · 시·군의 사회보장사업 연계·협력 및 조정 · 광역 단위 욕구 분석 및 사회보장사업 개발
기초자치단체 지원	· 시·군의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전문성 향상 지원 · 시·군의 사회보장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 시·군의 자원 개발과 자원정보 공유

4) 예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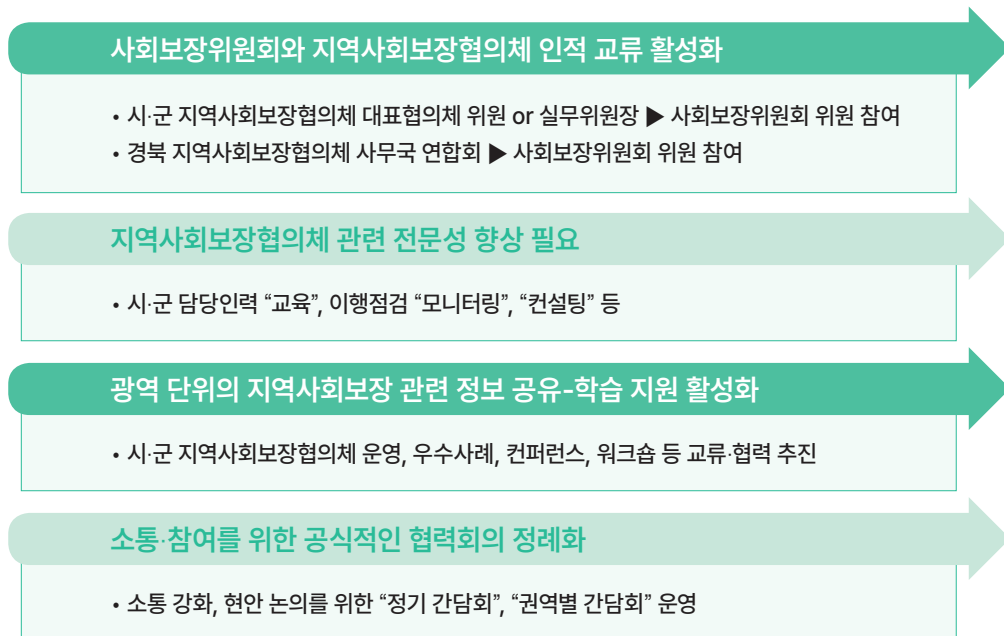
-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예산 규모는 구성원 4명을 기준으로 총 3억 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항목으로 구성됨
- 본 연구 4장의 경상북도 내 사회복지 분야 유사 조직의 예산 편성 내역과 다른 지역의 유사 지원조직 중 현재 시점에서 안정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기, 세종을 토대로 설정함
 - 인건비 : 사무국 구성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1.45억 원(전체 예산의 48.3%) 규모로 책정하였으며, 구성원 4명에 대한 급여 및 제수당, 퇴직급여 등이 포함됨
 - 운영비 :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5천만 원(전체 예산의 16.7%) 규모로 책정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집기 구입, 여비, 일반운영비 등이 포함됨
 - 사업비 :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5억 원(전체 예산의 35.0%) 규모로 책정하였으며,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사회보장 조사 등의 연구비, 교육 및 간담회비, 각종 회의 및 모니터링비 등이 포함됨

5) 조직 구성원

-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 총괄 책임자(사회복지 전공 필수)로서 공공(경상북도, 시·군)과 소통 및 협력 등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높은 관리자가 요구됨
 - 공공에서 교육, 워크숍 등 사업추진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필요



6) 시·군과의 연계·협력 방안



7)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과제

-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무국은 경상북도의 하부조직이 아니며, ‘(가칭)경상북도 실무추진단’에서 각 주체별 업무의 범위 및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함
- 사무국은 22개 시·군과 파트너십(partnership)을 바탕으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연계·협력 강화 필요
 - 시·군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보완적인 역할이 요구됨
- 경상북도 - 시·군- 읍·면·동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계의 일원화 필요
 - 분석결과 시·군 지역사회보장 업무 추진의 통합성 결여(이원화) 확인
-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필요(2024) : 사무국 운영 근거 마련
-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필요(2024)

참 고 문 헌

- 경북복지재단. (2023). 「슬기로운 경기복지거버넌스 생활 안내」.
- 김가희·김보영·김지민. (2022). 「지역사회보장 기반 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시·도]」.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2023). 내부자료.
- 정상기·홍재봉. (20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경북행복재단.
- 정홍원 외. (2019).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내용은 경북행복재단(2023)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운영모델 개발(Report 2023-07)'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스 페 셜 코 멘 트

SPECIAL COMMENT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운영모델 개발」 연구에 애써주신 경북행복재단과 연구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목적은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제도적 연결뿐만 아니라 22개 시·군과 경상북도의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담당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형식적인 조직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본 연구를 기점으로 하여 앞으로 그 기능을 원활히 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공공, 민간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하고 협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운영의 '목적',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역할',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참여자(주민 등)와 협력 기관(공공, 민간)을 연계·협력할 '책임'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행보이며, 경상북도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다만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운영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 마련은 물론, 사무국의 명확한 기능과 역할, 시·군과의 수평적인 파트너십, 하나의 협의 체계 구축 등을 기반으로 사무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는 각 시·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상북도-시·군 간 원활한 교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등 고유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정, 역량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북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연합회 회장 김 현 속

경상북도 가족돌봄청년 지원방안



곽아람(경북행복재단 연구원)

장용언(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태한(구미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1 연구배경 및 목적

- 현대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와 가족해체 속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특히, 미디어를 통해 이슈화된 청년의 간병비극은 가족 부양·돌봄 어려움의 이해와 더불어 가족돌봄청년 지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
-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나, 경상북도의 경우 가족돌봄청년 문제의 심각성과 지원을 위한 논의가 아직 부족함.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경북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제도권 안으로 유인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가족돌봄청년 정의

- 국외(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을 영케어러(Young carer)와 영어덜트케어러(Young adult carer)로 구분하여 각 나라별 개념과 정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을 “가족·친척을 돌보는 주돌봄자”로 설명하고 있음.

표 1. 국외 가족돌봄청년 정의

국가	정의	연령
영국	장애, 신체 및 정신질환,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친척을 돌보는 18세 미만 청소년	18세 이하
스웨덴	장애, 질환, 또는 중독이 있는 어른과 함께 사는 Barn som anhöriga(BSA)로 불리는 ‘친족으로서의 아동’	-
호주	장애나 신체·정신질환, 약물중독, 고령의 가족이나 친구를 돌보는 25세 이하 청년	25세 이하
미국	8~18세 이하 어린 간병인	8~18세
일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어른이 하는 돌봄의 책임을 떠안아 집안일과 가족의 보살핌, 간병, 정신적 지원을 하는 1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캐나다	25세 이하의 젊은 청년 중 그들의 가족 구성원의 만성질환, 장애, 정신건강 또는 물질사용 문제, 노화에 따른 문제로 인해 상당한 시간 무보수 돌봄을 제공하는 자	25세 이하

자료 : 최영준 외(2022), 하수정(2022), 허민숙(2022), 서울시복지재단(2023)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 우리나라는 2021년 대구 청년 간병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가족돌봄청년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이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제정되면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 조례에서 설명하는 가족돌봄청년은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민법'에 의한 질병·장애가 있는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는 돌봄자를 의미하고 있음.

표 2. 각 시도 조례에 나타난 가족돌봄청년 정의

시도	제정/개정	정의	연령
서울시	2022.10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	14세~34세 이하
대구시	2023.08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9세~34세 이하
대전시	2023.07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8세~39세 이하
광주시	2023.09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	34세 이하
경기도	2023.05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	34세 이하
강원도	2023.03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4세~39세 이하

자료 : 각 시도의 조례

3 국내 가족돌봄청년 정책 및 지원제도

- 보건복지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세~64세)과 가족돌봄청년(13세~34세)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음.
- 2023년 경북에서는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고령군, 칠곡군, 울진군에서 사업을 공모하여 진행하고 있음.

표 3. 일상돌봄서비스 종류 및 내용

대상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돌봄필요 중장년	식사·영양관리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3회 이상)
	병원동행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심리 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휴식 지원	서비스 이용자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건강생활 지원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월 8회)
	소셜 다이닝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월 4회)
	교류증진 지원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월 4회)
가족돌봄 청년	식사·영양관리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돌봄대상가족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병원 동행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심리 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휴식 지원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간병 교육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총 8회)
	독립생활 지원	경제교육, 생활 법률교육, 진로탐색, 멘토링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월 3회)

-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에서는 가족돌봄청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경주시에서 생활위기지원금 및 자기계발지원금으로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주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사업」을 2023년 5월부터 진행하고 있음.

표 4. 시도별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사업

지역	사업명	지원기관	지역	사업명	지원기관
서울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서울시	부산	사각지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부산시 북구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사업	서울시	대구	행복수성 케어(Care) 사업	대구 수성구
	광진형 PLUS 돌봄SOS사업	서울 광진구	광주	광주서구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사업	광주서구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운영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소년 자립 지원 '우미 희망케어'	우미희망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강남복지재단	대전	당진형 가족 돌봄 청년 지원사업	당진시복지재단
	영케어러 케어 투게더	서울시청년 활동지원센터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경기도 광명시
	생활안정지원사업 '영케어러 케어링'	서울시청년 활동지원센터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사업	경기도 오산시
	Young Carer 바로서기 사업	서서울 생명의전화		가족돌봄 청소년(영케어러) 지원사업	용인시청소년 미래재단
	청년 다다름 사업	청년재단	충북	영케어러 사회적 돌봄사업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모두가 행복해지는 돌봄'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강남복지재단		경북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농어촌지역(경기, 전북, 경북, 제주) 가족돌봄청년 위기극복지원사업	밀알복지재단	제주	제주가치 통합돌봄	제주 제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캠페인 '돌봄의 무게'	월드비전			
영케어러 지원사업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주 : 2023년 10월 이전 내용

4 영남권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¹⁾의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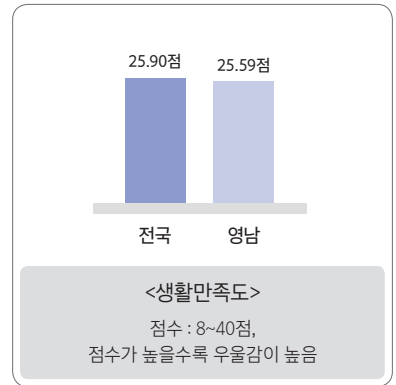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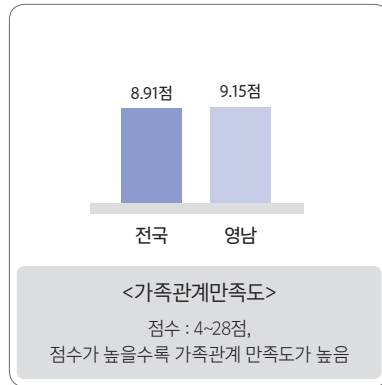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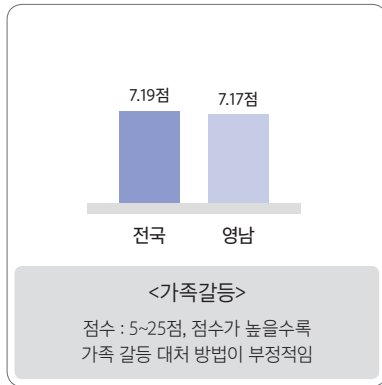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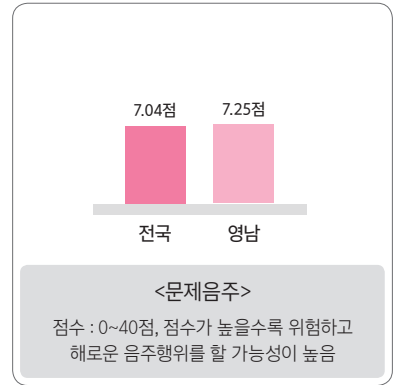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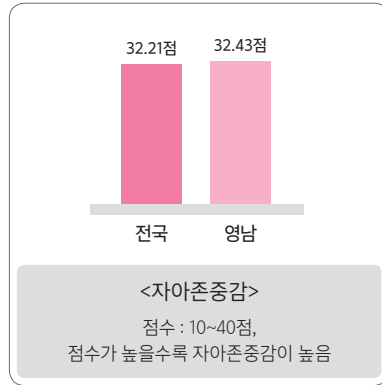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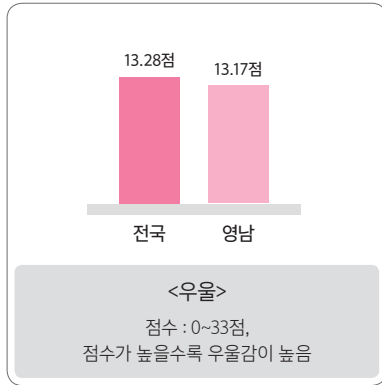
- (분석자료) 본 연구는 가족돌봄청년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데이터 17차년도(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²⁾
- (분석대상) 영남권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가족원 중 장애가 있거나 건강상태가 아주 심각한 경우를 돌봄가족이 있는 경우로 보고 해당 가족을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전국 총 311명 중 영남권 청년 89명)

1) 한국복지패널데이터는 응답자의 지역을 서울, 수도권(인천/경기),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남/세종), 강원(충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도)로 전국을 7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이에 본 연구는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응답자를 영남권(경상도) 거주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함.

2) (한계) 본 패널데이터는 전국 단위 조사라서 경북 지역 중심의 분석에 한계가 있음. 가족돌봄청년은 대상자 선정 조건에 따라 전국 311명, 영남권 89명으로 나타났으나 영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총 5개 사·도가 합쳐짐에 따라 경상북도만의 청년을 분석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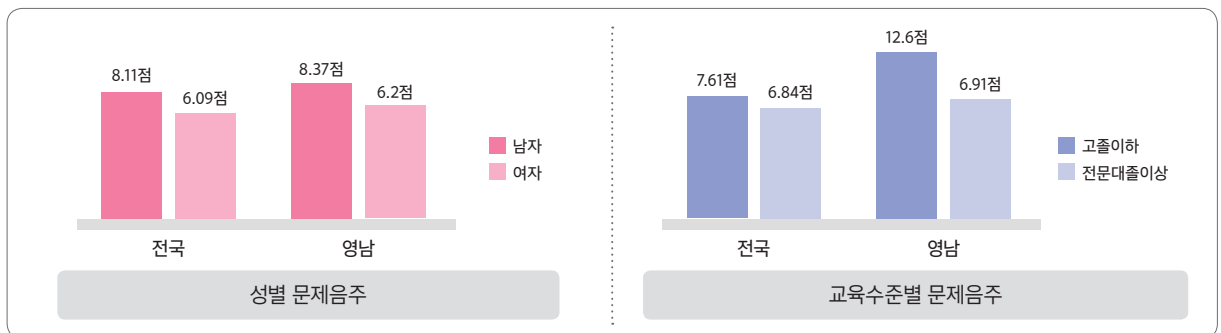
1) 가족돌봄청년의 건강, 가족, 생활 평균 점수

· 전국과 영남의 우울, 자아존중감, 문제음주, 생활만족도의 점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만족도의 경우 전국에 비해 영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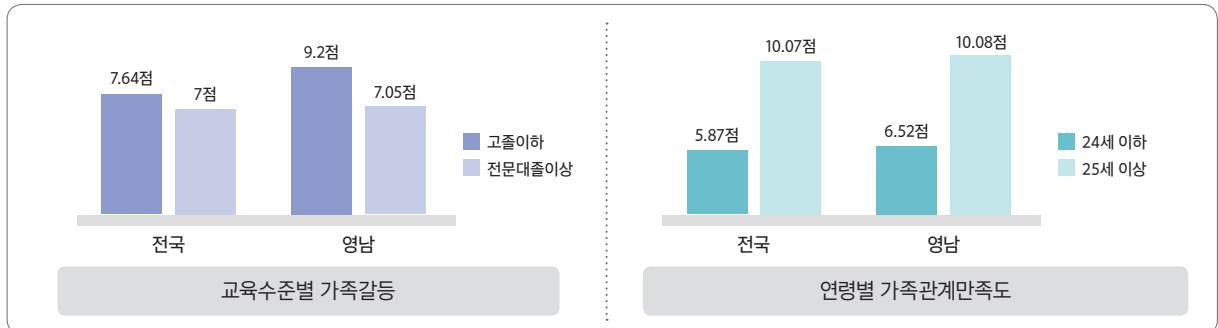


2) 가족돌봄청년 특성에 따른 건강, 가족, 생활 평균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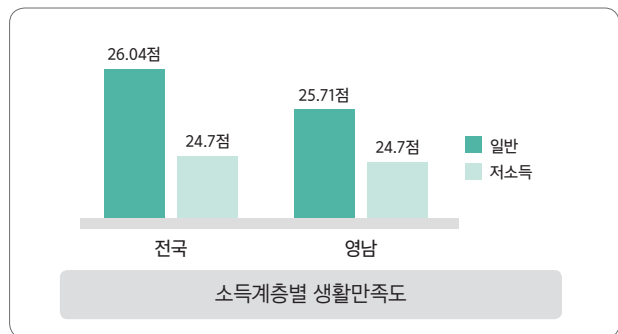
· 첫째, 가족돌봄청년의 문제음주행위를 살펴보면, 남성 청년의 경우 위험하고 해로운 음주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문제음주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고졸이하) 청년이 음주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둘째, 가족돌봄청년의 가족갈등을 살펴보면, 전문대졸 이상 청년보다 고졸이하 청년의 가족갈등이 더 높았음. 또한, 가족관계만족도를 살펴보면, 24세 이하 청년보다 25세 이상 가족돌봄청년의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셋째, 가족돌봄청년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저소득층보다 일반계층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가족돌봄청년 특성과 건강, 가족, 생활 간 회귀분석 결과

- 가족돌봄청년의 특성과 건강, 가족, 생활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beta = -.439, p < .001$),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beta = -.290, p < .05$)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돌봄청년의 낮은 자존감과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더해질 때, 청년의 우울이 더 깊어질 수 있음.
- 둘째, 공공복지서비스를 이용할수록($\beta = 4.266, p < .001$)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공복지 서비스를 이용할수록($\beta = -.379, p < .01$) 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를 가족관계 만족도와 연관지어 보면, 공공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년은 서비스가 돌봄에 도움이 되지만, 서비스 이용 자체가 개인의 경제, 주거, 직업, 사회적 친분, 여가생활 등의 만족감을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5. 가족돌봄청년 특성과, 건강, 가족, 생활 간의 관계

지역	종속변수 : 우울				종속변수 : 가족관계만족도				종속변수 : 생활만족도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성별	.620	.580	.107	1.068	-.150	1.407	-.012	-.106	-.373	.660	-.055	-.565
연령	-.712	.689	-.108	-1.033	2.572	1.639	.175	1.569	-.703	.780	-.092	-.901
소득계층	-1.261	.954	-.144	-1.321	-1.988	2.311	-.101	-.860	-.058	1.093	-.006	-.053
교육수준	.025	1.298	.002	.019	-2.830	3.101	-.106	-.913	2.334	1.440	.168	1.621
취업여부	-.414	.661	-.066	-.626	.121	1.594	.009	.076	-1.004	.740	-.139	-1.358
맞춤형급여수급	.052	1.441	.004	.036	-1.283	3.460	-.043	-.371	-2.073	1.610	-.134	-1.288
공공복지수급	.083	.716	.014	.116	6.510	1.526	.502	4.266***	-2.553	.747	-.379	-3.418**
우울	-	-	-	-	.123	.293	.055	.419	-.320	.133	-.275	-2.414
자아존중감	-.330	.083	-.439	-3.964***	.369	.218	.219	1.696	.197	.102	.226	1.939
문제음주	-.075	.082	-.100	-.920	-.144	.197	-.086	-.730	.013	.093	.015	.144
가족갈등	-.063	.175	-.036	-.358	-.290	.419	-.074	-.692	-.073	.198	-.036	-.370
가족관계만족도	.021	.051	.048	.419	-	-	-	-	.114	.056	.220	2.045
생활만족도	-.250	.104	-.290	-2.414*	.515	.252	.267	2.045	-	-	-	-
R ² = .436 Adjusted R ² = .334 F = 4.308***				R ² = .350 Adjusted R ² = .233 F = 3.001**				R ² = .465 Adjusted R ² = .369 F = 4.852***				

*p<.05, **p<.01, ***p<.001

주 1) 성별(남성:0, 여성:1), 연령(~만24세 이하:0, 만25세 이상~:1), 소득계층(일반가구:0, 저소득가구:1), 교육수준(고졸이하:0, 전문대졸이상:1), 취업여부(미취업:0, 취업:1), 맞춤형급여 수급 유무(무:0, 유:1), 공공복지서비스 이용 유무(무:0, 유:1), 우울(점수), 자아존중감(점수), 문제음주(점수), 가족갈등(점수), 가족관계만족도(점수), 생활만족도(점수)

5 FGI(초점집단면접) 결과

- (가족돌봄청년)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면서 신체·정신 질병 및 장애를 소유한 민법상 가족 구성원(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을 대상으로 청년이 직접 가족돌봄(가사, 간병 등)을 행하거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총 7명 대상으로 인터뷰함.
- (사회복지현장실무자)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거나 청년 지원 사업(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실무자 총 1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함.

1) 가족돌봄청년 FGI 결과 요약

상위영역		하위영역
가족 돌봄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가족에 대한 연민, 미안함, 책임감으로 시작된 돌봄 · 형제 및 친인척의 무관심 속에 홀로 책임지는 돌봄
가족 돌봄으로 인한 문제	돌봄 부담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책임한 요양시설(간병인 등) 때문에 과중되는 돌봄 · 돌봄의 부담으로 인한 자살시도 경험
	경제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간병)비의 부담이 있지만 돌봄을 위한 지출 · 미래를 위한 저축의 어려움
	사회생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가족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 · 하고 싶은 것 보다 가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직장) · 경력 단절로 인한 취업의 두려움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으로 인한 신체적 질병 발생 · 돌봄으로 인한 무기력, 우울감 등 발생
	주변인(친구/이성 등)과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사람들 시선의 불편함 ·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공허한 '나'의 삶 · 돌봄가족 때문에 포기한 이성과의 연애/결혼
	사회적 지원 부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보 부족 · 혼자 알아봐야하고, 신청이 복잡한 절차로 인해 포기한 서비스 · 많은 혜택 속에서도 대상 조건에 배제되어 받지 못하는 서비스 · 도움이 되는 공적지원 탈락에 대한 불안감
가족 돌봄 상황대응을 위한 노력	질병(질환)치료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질병(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경제활동 및 진로 준비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과정에서도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 경력 단절을 만회하기 위한 공부(학업) 시작
	사회적(공적) 지원 이용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도움을 요청하여 지원내용 살펴봄 · 복지(종교) 시설 후원 등을 통한 지원 받음
	친구/이성에 받는 지지와 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이성의 위로로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함
현재 가장 필요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을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절실 · 돌봄가족 간병(간호)를 위한 의료 지원 · 가족돌봄청년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필요 · 청년의 직접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기관) 필요 · 가족돌봄청년과 돌봄가족의 이동지원 · 공식적인 돌봄의 인정

2) 사회복지현장 실무자 FGI 결과 요약

상위영역		하위영역
가족돌봄청년 문제 주목 배경		· 복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청년의 문제 발생 · 청년의 보호보다는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한계
드러나지 않는 가족돌봄청년		·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두려움 · '효자'라는 이름하에 가족 내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
가족돌봄청년으로 성장하게 되는 상황		· 다른 가족(친인척)의 지지체계 약화로 홀로 감당하게 된 돌봄 · 원가족 내 문제로 인한 비자발적인 돌봄의 시작 ·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던 자녀가 성장하면서 역으로 돌봄 제공
가족돌봄청년의 취약점		· 사회 적응력 약화 · 지원 서비스 등 정보 접근의 취약 · 활동 가능 청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없다는 인식 · '혼자'임을 두려워하는 청년
가족돌봄청년 지원방안	실천적	· 가족돌봄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 · 학업 지속을 위한 환경 제공 · 취업/고용 지원 · 청년-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 · 지지 및 정보 등 제공하는 후견인(멘토/코칭) 필요 ·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필요
	정책적	·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 · 의료지원을 위한 보건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력 ·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필요 · 현재 서비스(제도)에서 지원 대상 범위 확장

6 경상북도 가족돌봄청년 지원방안

1) 일상생활 동행을 위한 인력 배치

- 가족돌봄청년을 지지하고, 이들의 일상생활을 지도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력인 '행복 동반자'를 제안함.

2) 가족돌봄청년 자조모임(단체) 지원

- 자조모임 지원은 가족돌봄청년들의 경험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재해석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청년의 지지체계 형성은 이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임.

3) 가족돌봄청년 이해와 인식 제고 교육 추진

- 아직 경상북도는 가족돌봄청년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와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청년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을 진행해야 함.

4)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마련

-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에서 이들이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제안함.
- 본 조례는 지원대상 정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가족돌봄청년의 종합적인 지원사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의 중요성을 포함하여야 함.

5) 취업 장려 인센티브(복지포인트) 제도 보완

-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여 사회성을 강화하고, 경제 및 생활의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인센티브(복지포인트) 제도가 필요함.

6) 돌봄 및 생활지원금 지원 추진

-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가족돌봄청년 및 가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봄 및 생활지원금 형태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경북도 또는 시·군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실비 또는 현금보조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제안함.
- (가족돌봄청년) 교육비, 생계비(식품, 공공요금 등), 건강지원(본인),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자기계발비(학원, 등록금, 자격증 취득, 취업준비 등), 문화·여가(공연, 교통, 숙박, 레저 등), 심리정서 지원비 등
- (가족구성원 및 돌봄가족) 의료비(간병비), 건강지원(가족구성원), 가족 돌봄(요양보호사파견 등) 등

참 . 고 . 문 . 헌

서울시복지재단. (2023). 가족돌봄청년 업무 매뉴얼.

최영준·김보영·김윤영·임소현·오서은. (2022). 영케어러의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혼합방법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Vol.1: 119-197. 한국사회복지학회.

하수정. (2022). 스웨덴의 영 케어러 연구 현황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Vol.23: 25-49.

허민숙. (2022).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지원 제도와 시사점: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한 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본 내용은 경북행복재단(2023) '경상북도 가족돌봄청년 지원방안(Report 2023-06)'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스 페 셸 코 멘 트

SPECIAL COMMENT



최근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가족 내 돌봄 기능은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욕구는 기존의 사회서비스 분야(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를 넘어 심리·정서, 문화·여가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다변화되면서 '돌봄의 사회화' 정책은 현대 복지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돌봄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 중 최근 가장 주목받는 것은 '가족돌봄청년'으로, 이들은 가족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독립과 자립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하거나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적 체계 내에서 가족돌봄청년 문제에 대응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모호하고, 전통적인 복지대상자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인지(개념, 정의) 부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발표하였고, 2023년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일상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역별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에 맞춰 진행된 본 연구는 중앙정부 실태조사 이후 경북에서 최초로 수행되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가 지역의 복지 수요와 실정에 부합한 복지 정책 추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실버케어복지학과 외래교수 김은영



밝은 내일, 도민이 행복한 경북!

MISSION

경상북도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가치 실현

VISION

지역 사회서비스 미래를 열어가는 전문기관



경영목표 & 추진전략

사회서비스 정책연구

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대응

- 보건복지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수행 및 기초통계 구축
- 사회서비스 협력체계 기반조성 및 학술대회 개최
- 도·시·군 및 현장 요구의 맞춤형 대응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기관 현장 지원

- 사회서비스 현장 개선과제 발굴
- 컨설팅·평가인증
- 시설운영·평가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사회서비스 인력 역량강화

보건복지 관련 교육 지원

- 전문교육콘텐츠 개발·운영
- 사회서비스 현장 교육 수요 조사
- 교육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 구축

- 윤리·인권,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확산
- 노동환경, 안전 등 사람중심 안전사회 구축
- 도민참여, 상생협력 등 참여중심 협력사회 구축



3년 연속(2020-2022)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 S등급' 달성

「경북행복 BRIEF」는 경북행복재단의 보건·복지 연구성과 및 주요 동향을 경상북도민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

김동화 | 정상기